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29호

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7-2번지 일대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2023년 제15차 건축위원회 심의(2023. 8. 29.)를 거쳐 「건축법」 제71조제7항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, 위치,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3월 14일
서울특별시

1. 지정목적

- 가. 도시가로 및 주변 도시맥락을 고려한 주동 배치,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커뮤니티 가로변의 선큰 및 커뮤니티시설 설치로 지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가로 형성 등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
- 나. 체계적 공간구성으로 오픈스페이스 형성 및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확보,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동주택을 계획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활성화 유도

2. 특별건축구역의 위치, 범위 및 면적

구역명	위치	범위	면적
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7-2번지 일대	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	25,702.7㎡

3.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

가.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

구역명	주용도	대지면적	높이 (최고층수)
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	공동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	25,702.7㎡	해발고도 151m (최고층수 49층)

※ 세대수, 면적, 등 세부 건축개요는 특별건축구역 관계도서 참조 요함

나. 특례적용사항

구역명	특례적용사항	적용취지
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	「건축법」 제60조 (건축물의 높이제한) : 배제 인정	외부가로변에서의 통풍, 채광, 개방성 등 사업지 주변현황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가능
	「건축법」 제61조 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: 완화 인정	-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주동 배치 가능 - 주거성능기준 및 단지내 거주민 프라이버시를 저해하지 않는 배치 및 형태 계 획과 외부 가로변 등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 가능

4. 건축물의 설계,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

- 관계법령에 따름

5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
-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(경미한사항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[서울특별시
영등포구고시 제2019-185호(2019.12.05.)]에 따름

6. 기타사항

-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서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(☎ 02-2133-7141), 영
등포구 주거사업과(☎ 02-2670-3501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■ 특별건축구역 결정도

